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와 대응 과제

| 유해미

1. 문제제기
 2. 긴급돌봄의 수요와 대응 실태
 3. 정책 제언
- 참고문헌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와 대응 과제¹⁾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SUMMARY

- 긴급돌봄 수요는 이른 하원 등으로 인해 상시로 요구되는 틈새보육과 구분되므로 종일제돌봄의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제도화가 요구됨.
-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추가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7.3%로 조사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 긴급돌봄 유형은 자녀가 아픈 경우,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근로 상황, 가정내 양육가구의 주양육자 부재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아동돌봄 관련 유관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과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을 병행하는 지원방식, 기존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세부과제를 제안함.

1)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문제제기

- ▶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는 보육·교육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여 종일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일부에서는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야간연장보육을 제공함(보건복지부, 2024: 397).
 -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만 3~5세) 중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돌봄활동(유아교육법 제2조, 12조, 13조)(교육부, 2024b: 10)으로, 운영시간은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함.
- ▶ 초등자녀를 대상으로는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공해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학교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늦은 오후 시간대의 긴급돌봄 대응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초등학생 1학년에 이어 2025년에는 초등학생 2학년 까지 매일 2시간을 무료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교육부, 2024a: 1).
 - 2024년부터는 기존에 초등방과후와 초등돌봄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통합하여 늘봄학교 중심의 단일체제로 전환하고, 학교에서 지역내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늘봄허브)을 구축할 예정임(교육부, 2024a: 16).
 - 이들 계획에 따라 기존의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오후 1~5시 위주였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 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교육부, 2024a: 20).
- ▶ 기관 중심 돌봄서비스 이외에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연계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이나 등교가 힘든 경우에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4a: 65-69).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 모바일 앱을 통해 1회 2시간 이상,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4: 57-58).
 - 서비스 신청시간의 경우 2023년부터는 계획되지 않는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시간 전으로 단축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여성가족부, 2023: 1).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4: 16, 69).

▶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긴급돌봄은 일시적이고 예고되지 않고 상황에서 요구되므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 이 글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특성 및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

-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가구의 긴급돌봄 수요를 상시로 발생하는 틈새보육 수요와 차별화하고, 긴급한 사유별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안함.
- 특히 대표적인 돌봄 공백으로 지목되는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함.

2 긴급돌봄의 수요와 대응 실태²⁾

가. 조사 개요

▶ 긴급돌봄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막내 자녀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가구 총 1,5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징은 이하 <표 1>과 같음.

[표 1]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	43.4 (679)	200만원 이하	1.9 (29)
여성	56.6 (886)	201~300만원	8.3 (130)
연령		301~400만원	17.1 (267)
29세 이하	3.5 (55)	401~500만원	19.5 (305)
30~39세	53.8 (842)	501~600만원	18.3 (286)
40~49세	40.8 (639)	601~700만원	13.5 (211)
50세 이상	1.9 (29)	701~800만원	9.8 (153)
평균	38.4세	801만원 이상	11.8 (184)

2) 이하 조사결과는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거주지역 규모		총자녀수	
대도시	61.3 (960)	1명	47.1 (737)
중소도시	29.9 (468)	2명	44.0 (689)
읍면지역	8.8 (137)	3명 이상	8.9 (139)
맞벌이 가구 여부		평균	1.6명
맞벌이 가구	71.8 (1,123)	막내자녀 연령	
홀벌이 가구	27.8 (435)	만0~2세	33.2 (519)
근로 안함	0.4 (7)	만3~5세	32.6 (510)
		초등자녀	34.2 (536)
	계(수)		100.0 (1,565)

- 여성이 56.6%를 차지하며, 30~39세와 40~49세가 53.8%와 40.8%로 다수이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71.8%로 나타나며, 막내자녀 연령은 0~2세가 33.2%, 3~5세가 32.6%, 초등자녀가 34.2%로 유사한 수준임.

나. 자녀돌봄의 공백과 부모 직접돌봄의 가능성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자녀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음.

1)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원시각의 경우 80.1%, 하원시각의 경우 73.1%에 그침.

[표 2] 등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등원시각) 충족 여부(평일 기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등원 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8시 51분	81.0	19.0	100.0 (7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44분	80.1	19.9	100.0 (583)
홀벌이 가구	9시 13분	83.3	16.7	100.0 (209)
모두 근로 안함	10시 0분	100.0	0.0	100.0 (1)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5. 재구성.

[표 3] 주중 하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하원 시각) 충족 여부(평일 기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하원 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16시 47분	74.3	25.7	100.0 (7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7시 1분	73.1	26.9	100.0 (583)
홀벌이 가구	16시 8분	77.5	22.5	100.0 (209)
모두 근로 안함	15시 0분	100.0	0.0	100.0 (1)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7. 재구성.

-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등·하원 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희망하는 등원 시각은 오전 8시 25분으로 현재 보다 26분이 빠르고,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18시 20분으로 현재보다 1시간 33분이 늦은 것으로 조사됨.

[표 4] (이용시간 불만족 가구)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

단위: 시, 분, (명)

구분	희망 등원시각	(수)	희망 하원시각	(수)
전체	8시 25분	(151)	18시 20분	(204)
자녀연령				
영아	8시 22분	(66)	18시 22분	(94)
유아	8시 28분	(85)	18시 17분	(110)
<i>t</i>	-0.407		0.38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20분	(116)	18시 28분	(157)
홀벌이 가구	8시 42분	(35)	17시 51분	(47)
모두 근로 안함	-	-	-	-
<i>F</i>	1.564		7.061**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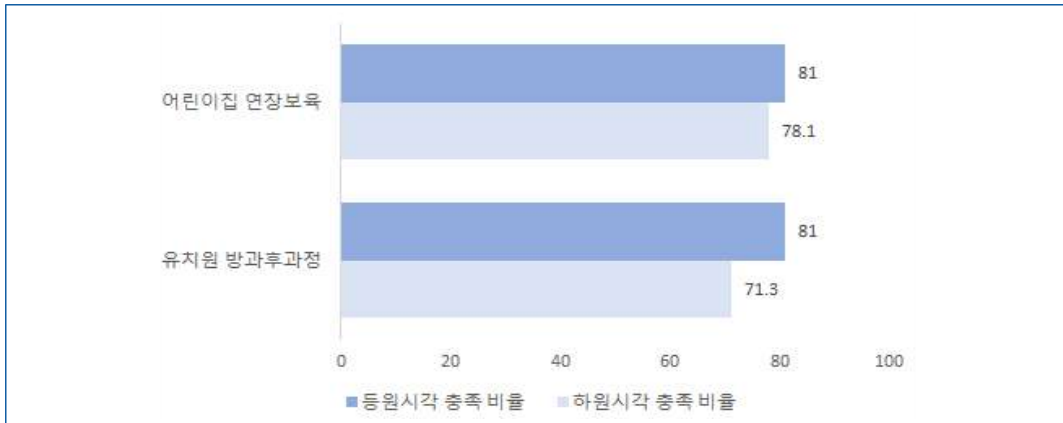
** $p < .01$.

- ▶ 어린이집 연장보육 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원 시각에 비해 하원 시각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 응답한 비율은 공히 81%에 그침.
-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

단위: %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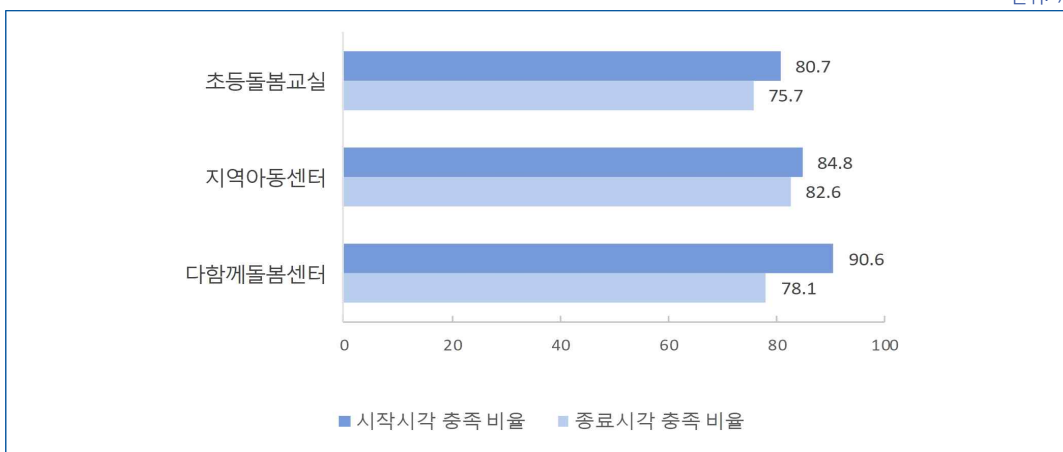
2) 초등저학년(1~3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

▶ 초등돌봄교실의 시작과 종료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와 75.7%에 그쳐(n=243)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는 응답 사례수가 적으므로 (n=46, n=32)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2]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시작·종료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

단위: %



주: 서비스 유형별 전체 사례수는 초등돌봄교실 243명, 지역아동센터 46명, 다함께돌봄센터 32명임.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9.

3)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부모 직접돌봄의 가능성

- ▶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므로,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부모의 시간지원 제도 이용가능성을 살펴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가족돌봄휴가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이하로 저조하고,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20%선에 그침.
 -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가능성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5]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 중	필요 시 이용 가능	제도 있으나 이용 어려움	제도 미 도입	제도 적용 대상 아님	제도 잘 모름	계(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5	17.5	41.1	13.7	8.9	10.3	100.0 (1,558)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7.7	19.4	36.6	19.4	9.1	7.8	100.0 (1,558)
재택근무	3.5	11.6	32.4	33.1	15.0	4.4	100.0 (1,558)
가족돌봄휴가	3.9	21.5	36.3	21.6	9.7	7.1	100.0 (1,558)

주: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2.

[표 6]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가능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별

단위: %(명)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 돌봄휴가	(수)
전체	26.0	27.1	15.1	25.4	(1,55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4.8	11.1	22.2	7.4	(27)
201~300만원	22.2	24.6	13.5	23.0	(126)
301~400만원	20.9	17.6	12.0	22.1	(267)
401~500만원	27.2	28.5	12.4	23.3	(305)
501~600만원	25.6	25.2	11.6	27.0	(285)
601~700만원	27.0	29.9	20.9	29.4	(211)
701~800만원	34.0	34.7	19.6	30.8	(153)
801만원 이상	28.9	35.8	19.5	26.1	(184)

주: 1) ‘현재 이용 중’과 ‘필요 시 이용가능’ 빈도를 합한 비율임.
 2)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2.

다. 긴급돌봄 사유와 대응 실태

긴급한 사유별로 발생 빈도를 조사하고,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그리고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돌봄의 실태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음.

1) 긴급돌봄 사유 및 어려움 정도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평균 4.14점(5점 만점),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4.09점,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98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3.95점, 자녀를 출산한 경우 3.93점, 급작스러운 연장근로와 일시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공히 3.88점, 이른 시각의 출근 3.85점, 주말 또는 휴일에 긴급하게 일하는 경우 3.82점 순으로 조사됨.

[그림 3]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 5점 평균

단위: 점



주: 1)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5.

2) 긴급돌봄 발생 빈도와 시간대

-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빈도는 갑작스러운 야근과 이른 출근의 경우 1주일에 한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와 7.8%로 가장 빈번하고, 이외 사유로 인한 어려움은 한 달에 2~3회와 연간 3~4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였거나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는 한 달 이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서 1주일에 한 번 2.5%, 한 달에 2~3회 20.6%, 한 달에 1회 24.5%로 조사됨.

[표 7] 사유별 긴급돌봄 수요 발생 빈도

단위: %(명)

구분	1주일 기준 한번	한달 기준 2~3회	한달 기준 1회	두달 기준 1회	연간 3~4회	연간 1~2회	계(수)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5	20.6	24.5	16.9	24.5	11.0	100.0 (1,098)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1.0	6.8	14.5	16.9	29.6	31.2	100.0 (1,139)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5.7	15.8	19.7	18.3	17.1	23.5	100.0 (1,040)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3.7	11.2	18.8	15.5	20.3	30.4	100.0 (978)
이른 출근 및 근무	7.8	14.6	16.1	13.4	19.7	28.4	100.0 (1,024)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2.9	9.1	13.0	11.8	16.4	46.7	100.0 (951)
직업훈련 또는 교육	2.9	5.3	10.1	11.1	18.7	52.1	100.0 (895)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1.2	3.5	7.6	10.1	26.9	50.8	100.0 (1,176)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4.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대를 시작과 종료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른 출근 및 근무의 경우가 오전 7시 12분으로 가장 이르고, 갑작스런 야근의 경우가 19시 46분으로 가장 늦은 시각으로 조사됨.

 - 긴급 사유에 따른 돌봄 공백의 시간대는 기관 이용가구에서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틈새보육 시간대와 달라서 기관 이용가구의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표 8]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 공백 시간대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8시 32분	16시 2분	(708)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8시 58분	16시 56분	(447)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15시 13분	19시 46분	(618)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9시 6분	16시 14분	(482)
이른 출근 및 근무	7시 12분	12시 26분	(531)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9시 35분	16시 15분	(351)
직업훈련 또는 교육	9시 54분	16시 10분	(262)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9시 36분	16시 44분	(263)

주: 1) 돌봄 공백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긴급 상황별로 자녀돌봄의 공백 발생 빈도가 ① 1주일에 한번 ② 한 달에 2~3회 ③ 한 달에 1회 ④ 두달에 1회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응답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5.

3) 긴급돌봄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긴급돌봄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자녀 출산이나 지연에 영향을 미쳐서 추가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7.3%,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5%,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있다’ 54.4%,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늦춘 경우가 있다’ 53.0%로 조사됨.

[표 9]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유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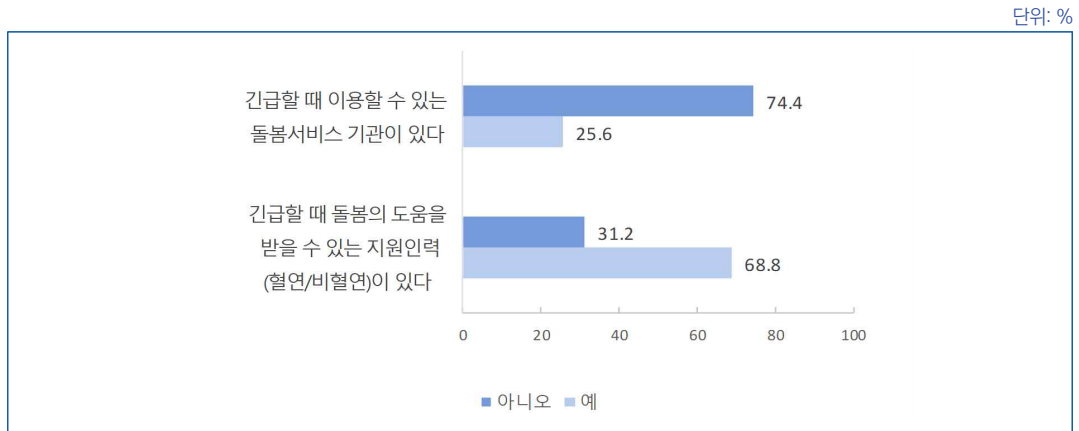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44.4	55.6	100.0 (1,364)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 연장 및 반복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4	45.6	100.0 (1,335)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3.0	47.0	100.0 (1,331)
긴급돌봄이 쉽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33.2	66.8	100.0 (1,228)
긴급돌봄이 쉽도록 근로형태를 변경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43.5	56.5	100.0 (1,286)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5	45.5	100.0 (1,322)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3.3	36.7	100.0 (1,364)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7.3	42.7	100.0 (1,297)
긴급돌봄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 (조부모 거주지 또는 선호하는 기관 인근 지역 등)	49.2	50.8	100.0 (1,313)

주: 세부 항목의 ‘해당사항 없음’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6.

- 긴급한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돌봄인력은 68.8%로 높게 나타나며, 돌봄서비스 기관은 25.6%에 그침.

[그림 4]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자원인력 및 돌봄기관 유무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7.

- 주요 변인별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줄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자녀 및 영아기구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돌봄서비스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25%선으로 낮아서 영유아 및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표 10]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자원인력 및 기관 유무: 자녀특성별

단위: %(명)

구분	긴급할 때 돌봄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돌봄서비스기관 있음	(수)
전체	68.8	25.6	(1,565)
자녀연령			
영아	72.1	26.0	(519)
유아	69.0	26.5	(510)
초등자녀	65.3	24.3	(536)
$\chi^2(df)$	5.639(2)	0.759(2)	
출생순위			
첫째자녀	69.9	24.2	(737)
둘째자녀	69.8	26.7	(689)
셋째자녀 이상	57.6	27.3	(139)
$\chi^2(df)$	8.908(2)*	1.474(2)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67-168. 재구성.

* $p < .05$, *** $p < .001$.

라. 긴급돌봄 지원요구

-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아파서 등원 또는 등교하지 못한 경우가 1순위 기준 47.2%, 1, 2순위를 합한 경우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가 1순위 기준으로 19.1%, 1, 2순위를 합하여 37.6%, '급작스러운 연장근로'가 1순위 기준으로 9.3%, 1, 2순위를 합하여 23.0%로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표 11]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전체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47.2	57.9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19.1	37.6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9.3	23.0
(긴급)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8	16.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는 경우	4.9	14.2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3.3	10.0
자녀를 출산한 경우(산후조리 등)	2.0	8.2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7	7.8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1.6	4.6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0.4	2.4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7	16.9
기타	0.1	0.3
계(수)	100.0(1,565)	(1,565)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4.

- ▶ 자녀가 아픈 경우 긴급돌봄 지원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용기관내 긴급돌봄 제공'이 평균 3.66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 그 다음으로는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2.95점,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2.92점 순으로 조사됨.

[표 12]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양육방식

단위: %(명), 점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이용기관내 돌봄 공간	6.4	9.1	21.3	39.1	24.2	100.0 (1,565)	3.66
의료기관 내 돌봄시설	15.1	18.7	34.7	22.1	9.4	100.0 (1,565)	2.92
가정 파견 전문 돌봄인력	15.0	19.6	31.2	23.8	10.3	100.0 (1,565)	2.95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17.8	21.6	31.0	22.4	7.2	100.0 (1,565)	2.79

주: 1) 이용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2) 부모 등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경우의 선호하는 양육방식임.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8.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원칙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한부모가족 우선지원과 맞벌이 가구 우선지원이 평균 3.92점과 3.88점으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이용기관의 긴급돌봄 제공 3.80점, 어린 아동 우선지원 3.72점, 긴급돌봄 사유와 무관하게 지원 3.70점, 다자녀가구 우선지원 3.66점 순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표 13]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원칙의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주양육자 돌봄이 힘든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 원칙에 대한 동의 수준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이용기관의 긴급돌봄 제공	4.7	7.1	19.7	40.9	27.6	100.0 (1,565)	3.80
맞벌이 가구 우선 지원	3.6	5.4	22.9	35.5	32.7	100.0 (1,565)	3.88
한부모 가구 우선 지원	3.0	6.4	21.1	34.8	34.8	100.0 (1,565)	3.92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5.2	7.5	28.8	33.6	24.9	100.0 (1,565)	3.66
어린 아동 우선 지원	3.6	8.1	27.2	34.9	26.2	100.0 (1,565)	3.72
긴급돌봄 신청자 일괄 지원(긴급돌봄 사유 무관)	5.6	9.3	25.3	28.8	31.0	100.0 (1,565)	3.70
긴급돌봄 지원 한도 설정(연간 최대 일수)	8.0	11.4	27.2	30.5	22.9	100.0 (1,565)	3.49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소득 ↓, 지원 ↑)	8.0	10.8	29.9	30.2	21.2	100.0 (1,565)	3.46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0.

▶ **아동연령대별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3개월에서 35개월 영아 자녀, 유아 자녀(만3~5세), 12개월 이하 영아자녀가 평균 4.16점, 4.13점, 4.09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는 반면, 초등학교학년(4~6학년) 자녀는 2.87점으로 낮은 수요를 나타냄.**

[표 14] 아동연령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아동연령별 긴급돌봄 지원 필요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영아 자녀(0~12개월)	3.8	6.4	15.1	26.6	48.0	100.0 (1,565)	4.09
영아 자녀(13~35개월)	1.7	4.2	15.3	33.7	45.1	100.0 (1,565)	4.16
유아 자녀(만 3~5세)	1.2	3.4	18.0	35.8	41.7	100.0 (1,565)	4.13
초등 1~3학년	2.7	9.8	29.0	34.7	23.8	100.0 (1,565)	3.67
초등 4~6학년	13.4	21.3	37.7	20.4	7.2	100.0 (1,565)	2.87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1.

3 정책 제언

가. 긴급돌봄 제도화의 필요성

- ▶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희망하는 출산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출산 시기를 지연하고, 부모의 휴직을 연장하거나 재취업이나 취업준비 시기를 늦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됨.
- ▶ 긴급돌봄 수요는 상시로 요구되는 틈새보육과 구분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돌봄서비스 기관의 종일제 운영 내실화를 통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대응체계가 요구됨.
 - 긴급돌봄의 공백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요구되나 부모 등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른 하원 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와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틈새보육 수요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시간이 부모의 돌봄 수요와 불일치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시간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는 해당 수요가 이용기관의 법정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포괄되기 때문임.
- ▶ 긴급한 상황이나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힘든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 긴급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제도의 이용가능성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아동돌봄의 공백을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나. 긴급돌봄 유형과 지원 원칙

- ▶ 긴급돌봄 지원 사유는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발생 빈도,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 인식을 토대로 1) 자녀가 아픈 경우, 2)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근로 상황, 3) 가정내양육가구의 주양육자 부재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자녀가 아픈 경우'는 주된 긴급돌봄 사유에 해당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한 정책적 수단이므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근로 상황으로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이른 시각 출근, 주말이나 휴일 근로, 출장으로 인한 공백에 한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내양육가구에서는 추가자녀 출산, 자녀 이외 가족 돌봄,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직업훈련이나 교육 이수 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간제보육은 ‘주양육자의 급작스러운 부재’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는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에서 평균 4점 (5점 만점)대로 높은 수요를 보였으나, 초등 고학년(4~6학년)에 대해서는 3점 이하의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므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순으로 지원함.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방식은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여 다양한 부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관돌봄은 이용기관에서 긴급한 돌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함.
- 가정내돌봄의 경우는 일시연계 방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되,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모색함.

▶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으로는 우선지원 대상의 명문화와 선별적 비용지원 방식을 모색함.**

- 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으로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가구, 읍면지역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함.
-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가구, 부모 중 한 명이 임시근로를 하는 가구,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명이 비전형적 근로시간(야간, 주말 교대제 등)을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정내 양육가구는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하지만, 비용지원은 주양육자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긴급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비스 연계 활성화, 통합연령 서비스 운영,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전략을 모색할 만함.**

-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 연계 활성화: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제고함.
- 서비스 인프라 공급 수준이 저조한 새벽, 야간, 주말보육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거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이때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해야 함.
-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유관 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단위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총괄 가구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 등이 요구됨.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연령 운영: 긴급돌봄 지원대상 아동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히 아동인구 규모가 적은 읍면지역 등에서는 기존 돌봄서비스 기관의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추구함.
 -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학령기 아동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유아를 지원대상에 포괄하고,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
-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 수준이 지역별 공급 격차를 보이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성 제고 방안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읍면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므로 취학전 아동의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돌봄 전문인력(보육교사 등)을 배치하고 보육실을 구비하며, 이용 절차 등 편의성을 제고함.

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기반 조성

▶ 유관 서비스의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지침 보완

- 긴급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돌봄에 특화된 서비스나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돌봄과 더불어 긴급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운영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는 긴급돌봄 내실화에 관한 지침을 보완함.

▶ 유관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단위 돌봄협의체 활성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긴급돌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함.
- 다부처의 돌봄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므로 긴급한 경우 이들 서비스를 총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됨.
- 지역 단위에서 돌봄공동체에서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 긴급돌봄 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부모의 인지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자녀 출산에 따른 현금성 급여(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신청 시 또는 해당 신청 사이트(임신·육아 포털 사이트)에 긴급한 돌봄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지역별 서비스 기관 등 상세 정보는 자치구 단위에서 오프라인(책자 우편 배송 등)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게는 입학 설명회,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 부모참여 행사에 맞추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 등을 공지함.
-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초등방과후 포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긴급돌봄에 관한 사항을 부각하여 이용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긴급돌봄을 신청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므로(여성가족부, 2023: 2),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라.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지원 방안

1) 아픈 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 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 아동을 위한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복지법」에서는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아동의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의 5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함.

[표 15]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 근거 조항 신설(안):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5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질병아동의 안전한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

자료: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52.

- 아동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인프라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질병아동의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질병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행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격 또는 절차 등 세부사항은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추어 조례로 규정하며,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예산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함.

2) 기관이용 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긴급한 근로 상황' 등

▶ 영유아 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반별 탄력정원 편성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연장보육시간에 영유아 혼합반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 유치원에서는 초등자녀 대상의 방과후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졸업생이 초등 저학년 시기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개반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그 밖의 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과 온종일돌봄 운영 유치원을 야간 긴급돌봄의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원 중인 기관의 운영시간을 벗어나서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아 및 초등자녀 대상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

- 급작스러운 야간근로 등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의 인건비 100%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 긴급돌봄 특화 기관(가칭: 긴급돌봄 아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시돌봄 비중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긴급돌봄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함.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는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3) 가정내양육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주양육자 부재' 등

▶ 시간제보육의 긴급돌봄 대응력 제고

- 시간제보육은 현재 6개월 이후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표 18 참고).
- 36개월 이상 아동의 긴급돌봄을 위해 해당 연령반을 추가로 구성하여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 시간제보육서비스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비용지원은 한 달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 총 1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

[표 16]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8조의2 제2항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 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 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9. 6. 12.>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단, 제28조의2 제2호의 긴급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유해미 외(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61~262.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 가정내양육가구에서는 긴급돌봄을 위해 파견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 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
 - 부모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에도 복지포털(<https://www.bokjiro.go.kr>)과 정부24(<https://www.gov.kr>),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도 해당 정보를 탑재하는 방안을 모색함.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4a).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교육부(2024b).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23). 보도자료: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2023.3.20).
 -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nowyoo@kicce.re.kr

2024 KICCE ISSUE PAPER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와 대응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